

F REPORT



원산지관리, 현장의 목소리

중소기업의 원산지 관리 및 위험요소 극복방안

이재현 | 더현관세사무소 관세사

중소기업의 원산지 관리 및 위험요소 극복방안



이재현
더현관세사무소
관세사

대한민국과 FTA 협정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2004년 4월 칠레를 시작으로 2023년 1월 인도네시아까지 총 59개 국가이며, 앞으로도 FTA 협정 체결국가는 점차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수출입기업은 변화하는 FTA 협정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이를 잘 이용하여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기회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수출입 기업 중 대기업은 일반적으로 FTA 및 원산지 관련사항을 별도로 관리하는 담당자(관세사 또는 원산지 관리사 등)를 두고 있어 변화하는 상황을 체크하고 미리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위와 같은 별도의 관리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러한 경우 수시로 변화하는 FTA 상황을 적절히 체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점이 많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하 수출 및 수입하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FTA 활용과 원산지 관리에 필요한 서류 및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협정적용 배제 및 벌칙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서언

원산지 관리(Origin Management)는 해당 제품의 원산지를 식별, 관리하고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세스로서, 원산지는 해당 제품이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를 나타내며, 국제무역 및 관세 관련 문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산지 관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역할을 가진다.

가. 원산지 식별: 제품이나 상품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며 원산지는 생산 과정에서 사용된 재료, 노동, 생산 시설, 기술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나. 관세 적용: 원산지는 관세 적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제품의 원산지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여부가 결정된다.

다. 원산지 조건 : 제품의 원산지가 잘못 표시되거나 실제 생산지와 다른 경우, 원산지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불법 무역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다.

라. 소비자 신뢰: 소비자는 제품의 원산지 정보를 통해 제품의 품질, 안전성, 환경적 영향 등을 평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마. 기타 : 원산지 관리는 수출입업체, 정부기관, 관세당국, 소비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며, 이를 통해 국제무역에서 원산지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관리하여 무역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수출 중소기업이 필요한 사항

1. 품목분류(HS CODE) 확인

FTA 활용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수출 물품의 '품목분류(HS Code)'이다. HS Code는 앞에서부터 2단위는 '류(Chapter)', 4단위는 '호(Heading)', 6단위는 '소호(Sub-Heading)'라고 부르며, 앞의 6단위까지는 국제 공통분류로 원칙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동일한 품목 분류를 사용하고 있다.



[표 1] HS 분류체계

| 분류체계 | 류(Chapter) | 호(Heading) | 소호(Sub-heading) | 부호(세번) | |
|------|-------------------|------------|-----------------|--------------|-------------------|
| 품목번호 | 2단위 | 4단위 | 6단위 | 8단위 | 10단위 ¹ |
| 법적지위 | HS 협약(회원국의 일치 의무) | | | 회원국에게 세분류 위임 | |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 물품의 경우 국가별로 HS 분류를 달리하고 있으며, 동일 물품들에서 HS코드 불일치로 해당국가에서 FTA 협정 적용을 배제하는 등 관세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동일물품에 대하여 수출국과 수입국의 HS코드가 다른 경우 수출신고 시에는 HSK 분류에 따른 HS코드로 수출신고를 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에는 수입국의 요청에 따른 HS코드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면서 관세청 지침인 '품목분류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FTA 협정 적용이 가능하다.

관세청 '품목분류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2020.08.04.)'에 따른 증빙서류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1 대한민국은 HS 분류를 10단위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HSK라 부름.

[품목분류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2020.08.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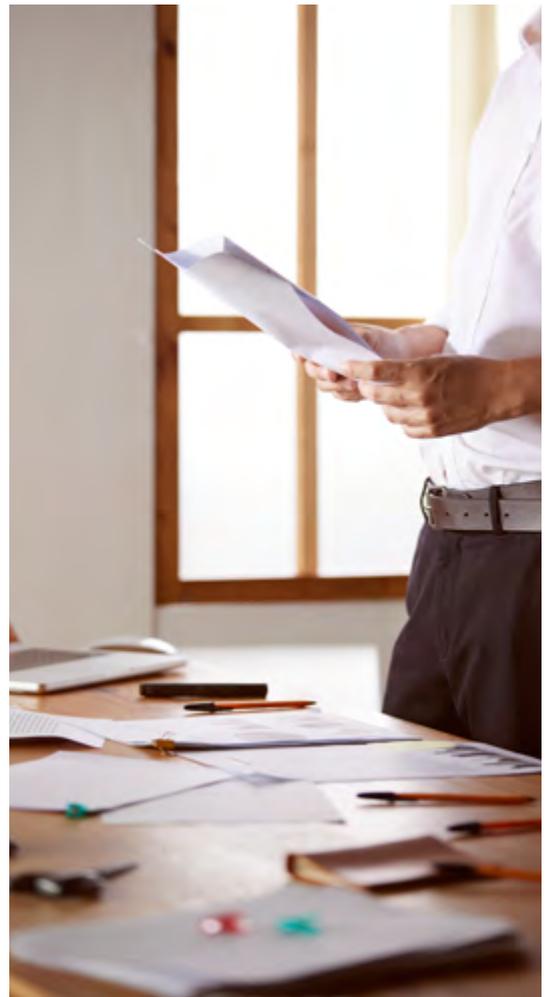
- 가) 수입신고필증
- 나) 품목번호 확인서
- 다) 사전심사결정서(advance ruling)
- 라) 협정상대국 관세 - 품목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보
- 마)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상기 서류는 최초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하면 동일 물품에 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최초 C/O 발급 번호만 기재하면 그 이후 증빙서류 제출이 생략할 수 있다.

2. 원산지판정

원산지 판정은 제품이 어느 국가에서 생산되었는지를 결정하는 프로세스로서, 제품의 생산 지역 및 조립과 가공 등에 따라 결정이 된다.

수출기업은 원산지 증빙서류를 통하여 물품을 수출할 국가의 개별 FTA 협정 내 원산지 결정 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을 확인 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가 한국(Made in KOREA)인을 입증하는 원산지확인서² 및 원산지소명서³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원산지확인서 : 물품 판매자가 수출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물품에 원산지를 확인해주는 서류

3 원산지소명서 :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소명하는 서류

[표 2] 원산지 결정기준 조회 방법

| 홈페이지 활용 | 조회 방법 |
|---|--|
| 관세청 FTA 포털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관세청 FTA 포털 → FTA 일반현황 → FTA 협정문 → 협정문 “원산지기준” 확인 → HS CODE 확인 |
| 산업통상자원부 FTA KOREA (https://www.fta.go.kr/main/) | FTA KOREA 포털 → 참고자료 → 협정문 정보 → 해당 FTA 협정문 선택 → 협정문 원산지 부분 → HS CODE 확인 |
| 관세청 원산지관리 시스템 (https://www.ftapass.or.kr/psr/view.do) | 원산지결정기준 → 기준년도 / 적용협정 / HS 코드(6단위) 입력하여 확인 |

3. 원산지 증빙서류

수출물품의 HS코드 검토 결과, 특혜세율 적용이 업체에 더 효율적이면서 동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하다고 판단된다면 해외거래처 요구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협정별로 규정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이 있다.

‘기관발급’의 경우는 관세청(유니패스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고, ‘자율발급’의 경우는 협정 별로 작성방법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상업 인보이스내 해당 내용을 기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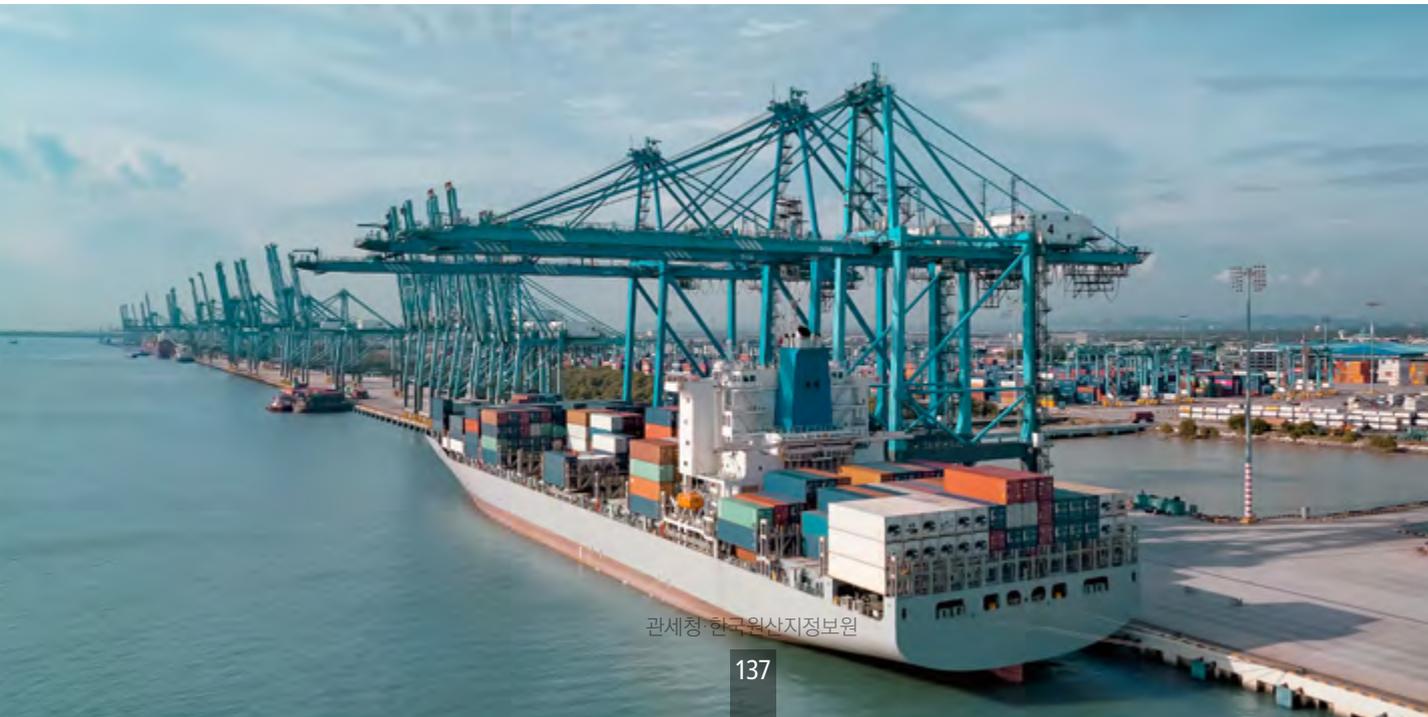
협정 별 작성 방법에 따르지 않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입국 관세당국에서 FTA 특혜 관세를 배제하거나 사후 검증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발급 전 반드시 관련 협정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한다.

또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경우 서류가 정상적으로 발급되더라도 원산지 사후심사를 대비하기 위하여 반드시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표 3] 원산지 입증 증빙서류⁴

| 구분 | FTA 특례법 시행령 제10조 (보관대상 원산지 증빙서류 등) | 실무 (원산지 입증서류) |
|-----|--|--|
| 수출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원산지증명서 ② 수출신고필증 원재료 수입신고필증 ③ 수출거래 계약서 ④ 물품 구입 관련 서류 ⑤ 출납, 재고관리대장 ⑥ 원산지확인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적서류(BL, INVOICE) 2. 자재명세서(BOM) 3. 원산지(포괄)확인서 4. 제조공정도 5. 원산지소명서 6. 원재료 거래명세서 (또는 구매 세금계산서) 7. 원가명세서 8. 수출신고필증 9.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문 10. 거래계약서 11. 기타 증빙서류 (사유서 등) |
| 생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원산지확인서 ② 원재료 수입신고필증 ③ 물품공급계약서 ④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제공한 서류 ⑤ 물품 생산 및 원재료 구입 관련 증빙자료 ⑦ 원가예산서, 원재료내역서, 공정명세서 ⑦ 출납, 재고관리대장 | |

4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상기 표의 '실무(원산지입증서류)'가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니고, 해당 서류 중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일부 서류만 제출함으로써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기 때문에 물품 및 협정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



3 수입 중소기업이 필요한 사항

1. FTA 협정신청서 작성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수입신고서와 함께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FTA 협정을 적용하나, 예외적으로 수출자(또는 생산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물품 선적 이후 발급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인 경우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사후 제출이 가능하다.

실무적으로 FTA 사후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FTA 특혜세율 적용이 적절한지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적이거나, 수입신고 수리 전 특혜세율을 신청할 때는 증빙서류 제출이

무작위로 선별되기 때문에 일부는 서류 제출 없이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FTA 검증은 사후에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는 해당 전문가(관세사 등)를 통하여 해당 수입 건의 특혜세율 적용이 적절한지 사전에 검토하여 사후의 리스크를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원산지증명서 오류 및 협정세율 배제 사례

| 오류 내용 | 실무(예) |
|--------------------|---------------------------------|
| 물품명 및 모델규격 불일치 | Invoice 품명 ≠ 원산지증명서 품명 |
| HS 코드 불일치 | 수입신고서 HS ≠ 원산지증명서 HS |
| 인보이스 번호 불일치 | Invoice No. ≠ 원산지증명서 Invo No. |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번호체계 오류 | 협정별 ⁵ 인증수출자번호 체계 불일치 |
| 원산지증명서 상 총중량 불일치 | B/L 총중량 ≠ 원산지증명서 총중량 |

5 한-EU, 한-EFTA, 한-영국 등 협정 별 나라에 따라 개별 인증수출자번호 체계 있음.

2. 원산지 증빙서류

수입자는 수입신고 관련서류(BL, Invoice, 운임 명세서, 거래계약서 등)와 원산지증명서(C/O)를 대조한 후 오류가 없는 경우 형식적으로 특혜관세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수입기업의 경우 상기 서류 검토와 더불어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가 올바르게 발급된 것인지 거래계약 체결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물론 생산자가 아닌 수출자의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 판정을 위한 자료(제조공정도, 자재명세서 등)를 준비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부가가치기준의 경우 수출국의 재료비율), 직접운송원칙, 최종 생산국가 등의 정보를 수출자에게 문의하여 최대한 준비하여야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3. 원산지 사후심사 대비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제조사⁶⁾'가 발행하고, 수입자는 해당 서류를 통하여 FTA 협정 특혜를 적용받지만, 관세청(또는 세관)에서 협정관세 적용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항상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원산지에 관한 조사 대상(FTA 특례법 제17조)]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6 한-미 FTA 경우 수입자도 발행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수출자, 생산자에게 발행 요청함.

우리나라 관세청도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원산지 사후검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만약 사후 원산지검증 결과 원산지가 불인정 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되어 부족세액 및 가산세 납부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표 5] 사후검증 방법

| | |
|-------|--|
| 직접 검증 |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질의, 정보요구, 현장방문 조사 |
| 간접 검증 |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 관세당국에게 원산지 검증 요청에 따라 자국 내 수출자 및 생산자의 원산지 적정성을 조사 |

4 협정관세 적용 제한 및 제재

수입물품에 관하여 원산지검증이 필요한 경우 관세당국은 우선 국내조사(서면 및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원산지조사 결과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국제조사를 실시한다.

국제조사의 경우 간접(세관 당국에 요청)조사와 직접조사(서면 및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원산지 규정 위반이 확인되었을 때 다음의 조치를 이행한다.

1. 협정관세 적용 제한

협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을 배제할 수 있고 차액의 세액을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가산세 징수 포함)



[협정관세 적용제한(FTA 특례법 제35조) 대상]

1. 자료 미제출, 거짓 또는 허위자료 제출한 경우
2. 직접검증 결과 기한 내 미회신. 현지조사 미동의 또는 동의여부 미통보한 경우
3. 현지조사 시 원산지 확인 자료 접근 거부, 협정 관련 서류 미보관한 경우
4. 서면/현지 조사 결과 원산지가 상이, 제공자료로 원산지 판정이 곤란한 경우
5. 간접검증 결과 기한 내 미회신, 회신결과 원산지가 상이, 원산지 판정이 곤란한 경우
6.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자료를 고의로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7. 개별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거부·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피조사자의 부도, 폐업, 소재 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

*가산세 징수

1. 부족세액 * 10% 상당하는 금액 (단, 부당한 방법으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40% 금액)
2.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 * 이자율⁷

2. 원산지규정 위반 시 행정벌칙

관세당국은 업체가 원산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하단의 표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조치 이행 전 업체에게 '의견(이의제기)'⁸ 제시할 기회를 부여한다.



7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8 업체는 조사 결과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제기가 가능하고 관세당국은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결정 내용을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표 6] 원산지 규정 위반과 행정벌칙

| 근거규정 | 위반 유형 | 형벌 수준 |
|-----------------|--|--|
| FTA 특례법 제44조 1항 |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비밀취급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FTA 특례법 제44조 2항 | 1)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발급한 자 2) 용도세율 적용 물품을 용도 외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자 4)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요구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5) 재수출 면세물품을 용도 외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 6)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세관공무원과 서류 발급자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과실(過失)로써 제2호,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3백만원 이하의 벌금 |
| FTA 특례법 제44조 3항 | 과실로 협정 및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 | 3백만원 이하의 벌금 |
| FTA 특례법 제46조 1항 | 1)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서류 미제출 2)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FTA 특례법 제46조 2항 | 1) 승인받지 않고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한 자 2) 용도세율 적용물품 중 세율이 낮은 용도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자 3) 원산지 증빙서류 오류통보 받고 세액정정, 보정, 또는 수정신고 등을 불이행한 자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양벌규정 (FTA 특례법 제45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임직원,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원산지 규정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결어

수출입 통관 업무에서 볼 때, FTA는 일반적으로 수출기업은 원산지증명서 발행을 담당하며, 수입기업은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서류 준비 및 적용 검토로 볼 수 있으나, 통관 후 사후에 진행되는 FTA 검증관리 업무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수출신고 수리 후 원산지증명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되더라도 발급 신청을 위하여 제공된 증빙 서류를 1년 정도를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자율 점검 할 필요가 있다.

수입기업 역시 수출업체가 제공한 원산지증명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등 원산지 사후 검증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덧붙여, 중소 수출입기업 모두 원산지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함으로써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없이 경쟁력이 강화되는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